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며, 경로당 식사비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초과액 사용가능한 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13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부문’이 동일한 사업에서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의 범위 조정(안 별표 1 제 72호 신설 및 별표 2 제81호)

1)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신축의 경우 50퍼센트, 리모델링의 경우 60퍼센트로 기준보조율을 신설함.

2) 종전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25. ~ 12. 8., 12. 15. ~ 12. 22.) 결

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2.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

제13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사업(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1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 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72.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확충	신축: 50 리모델링: 60	용지매입비 제외

별표 2 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9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299.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개·보수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별표 1 제65호 또는 제7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2026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5호 및 별표 2 제29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제65호 및 별표 2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 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 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생략) ⑤ ~ ⑦ (생략)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 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1.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한 보조사업 2.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 시적인 신규사업 ④ ----- ----- ----- -----. 1. 신규사업(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연 락 처	(044) 215 - 7158